

제65회 이사회 의사록

1. 회의일시 : 2022년 2월 24일 목요일, 10:30 ~ 12:18

2. 회의장소 : (재)드림파크문화재단 회의실

3. 출석임원 : 이사 7명, 감사 1명

(1) 전병성 이사장 (2) 홍경진 이사(위임 : 김지수사무관)

(3) 김상평 이사 (4) 주유연 이사 (5) 김미화 이사

(6) 이기호 이사 (7) 진선호 이사 (8) 권승희 감사

4. 결석임원 : 없음

5. 배 석 : 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9명, SL공사 문화공원처장 등 5명

6. 상정안건

○ 제2022-1호 :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에 따른 내용 및 조치
계획 보고 (보고안건)

○ 제2022-2호 : 2021년도 [제15기] 회계결산(안) (심의안건)

○ 제2022-3호 : 2022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(안) (심의안건)

○ 제2022-4호 : 재단 상대 소송관련사항 보고 (보고안건)

7. 회의 주요내용

이사장은 본회의가 정관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(재)드림파크문화재단 제65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(10:31)

1 제2022-1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에 따른 내용 및 조치계획 보고 (보고안전)

① 안전 주요 내용

-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(목적, 정의,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,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, 위반 시 처벌 등)
- 조치계획(안전관리자 채용, 안전관리수당 신설, 안전관리규정 정비)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사무국장 :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면서 총액인건비 예외사항으로 예산 편성 문구는 삭제 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
- 홍○○ 이사 : 저희 의견반영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(2/16)하였습니다.
- 전○○ 이사장 : 안전관리수당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③ 논의 결과 : “원안 접수”

2 제2022-2호 2021년도 [제15기] 회계결산(안) (심의안전)

① 안전 주요 내용

- 2020년도 회계결산부터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득하였고, 감사님의 확인을 거쳤음
- 정관 제25조에 따라 2021년도 회계 결산서를 확정하여 2월 말까지 주무관청(환경부)에 제출하고자 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권○○ 감사 :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제15기 2021년도 (2021.1.1.~2021.12.31.)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기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바,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③ 논의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☐ 제2022-3호 2022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(안) (심의안건)

① 안건 주요 내용

- 우리재단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의결하여 위탁사업 수행 및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
- 정관 제25조에 따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여 2월말까지 주무관청(환경부)에 제출하고자 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홍○○ 이사 : 승진가산급여가 보수규정에는 인건비로 인사규정시행 세칙에는 예비비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 정비가 필요함
- 사무국장 : 정부 지침에 성과급 및 각종 인건비 중 소송에 대한 대비책 또는 보상금은 총액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.
- 전○○ 이사장 : 승진가산급여는 보수규정으로 일원화 할 것
- 사무국장 : 예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
- 권○○ 감사 : 예산편성 시 운영비(노무사, 세무사 등)를 사무국과 코스단으로 나누어 하지 말고 합쳐서 편성 할 것
- 전○○ 이사장 : 앞으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일원화하여 정리하고, 감사님 말씀대로 노무비나 세무비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③ 논의 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④ 제2022-4호 재단 상대 소송관련사항 보고 (보고안건)

① 안건 주요 내용

- 재단 상대 소송관련 사항(5건) 보고
 -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(노동위원회, '21.5.6.) : K부장
 - 임금체불 진정(노동청, '20.12.3.), 임금 청구의 소(인천지법, '21.6.28.) : K과장
 - 임금체불 진정(노동청, '21.8월), 임금 청구의 소(인천지법, '22.1.25.) : C부장 등 6명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전○○ 이사장 : 조직이 원칙이나 규정을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규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타협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. 당사자들에 권리 주장에 의해 이왕 시작된 것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이○○ 이사 : 오늘 이후라도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법으로만 가지 말고 한번 더 해보고 안된다면 그때 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
- 김○○ 이사 : 조직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입니다. 그것이 허물어져버리면 조직이 아니죠.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규정과 원칙을 항상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게 결국은 조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③ 논의 결과 : “원안 접수”

8. 폐회

이상으로 65회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(12:18)